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행정안전팀
정주완 입법조사관

Overview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행자 사고 피해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낮은 이해도와 우회전 신호·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방식 전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여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

우회전 상황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2023.1)



차량 적색 신호등 + 보행자 녹색 신호등
=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



차량 우회전 신호등
= 해당 신호에 따라 우회전



여전히 취약한 보행자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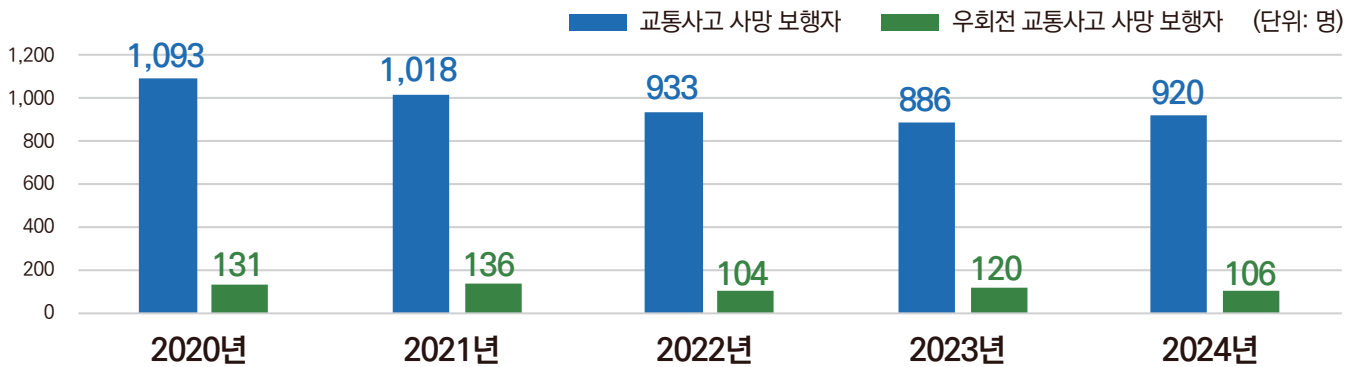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4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상황

| 교통사고 및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현황 |



※ 자료1:경찰청,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 2025.4.9.
※ 자료2: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도 정착의 장애 요인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위반을 단속

→ '사고위험성이 유추될 수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운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우회전 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저조한 것으로 확인

계획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증설이 지연되고 있음

| 전국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황 |



목표

2024년까지
400개
증설 목표

현황

2025년 10월
345개에
불과

※ 주: 2025년은 3분기 말 기준임
※ 자료: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변경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전체 교육·홍보의 95% 이상이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 매체에 집중

→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차량 일시정지 제도 교육·홍보 현황 |

(단위: 회, 매)

	2023년	2024년	2025 (10월)
TV	326	1,776	216
신문	323,329	1,826	22,301
라디오	886	939	288
전광판	4,983,300	130,859	314,846
홍보전단	3,199,589	2,644,260	2,059,833

※ 자료: 경찰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하여야 함



보행 취약계층 지역 우선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 검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 끝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교차로 회전반경을 축소하는 방안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장치 설치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교통섬을 철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 저감시설 설치 *과속방지턱의 상부 평탄면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구조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발간등록번호 | 31-9735046-001891-14 · e-ISSN | 2799-3027 · Copyright©NARS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제96호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관후 | 02-6788-4782 | www.nars.go.kr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REPORT

QR코드를 스캔하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주안,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
(「이슈와 논점」 제24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2. 26

